

Q8 | 산불을 실수로 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사람이 조심하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조한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입목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Q9 | 실제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나요?

A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39.5%로, 최고징역은 12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53.8ha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A(68)씨는 징역 10개월 형과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5일에 발생한 강릉산불의 방화 가해자가 검거되어 2심에서 1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산불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물을 정도의 위중한 범죄입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산불가해자)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분	포상금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 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 원 지급
	2년 미만	- 200만 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 원, 최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 원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 원, 최저 3만 원